

인권정책

01

제정
목적

세진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02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세진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 법인, 연결대상 종속회사, 관계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다. 세진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당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협력사, 인수·합병 등 사업활동 전반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세진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세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는다.

또한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희롱과 집단 따돌림, 괴롭힘, 위협과 같은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 및 괴롭힘 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세진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세진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세진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세진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아동노동에 관련한 법령 위반·적발 시 다음 사항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1. 회사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무교육을 중지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즉시 해고보다 아동노동의 이유가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인지 확인하고 노숙, 기아 등을 겪지 않도록 가족에게 일거리 제공 등 대안을 검토한다.

제6조. 산업안전보건 보장

세진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직원의 건강,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세진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자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세진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생활임금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04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관련 조항과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본 인권헌장을 제정함

- ①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 ②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2010)
- ③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④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2011)
- ⑤ 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18)
- ⑥ 국가인권위원회,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2018)
- ⑦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2019)

05

연락처

1. 담당 연락처 (인권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 ▶ 이메일 : eunjung0901@sejin-c.co.kr
- ▶ 전화 : 054-770-9500
- ▶ 우편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주)세진 총무팀

세진 대표이사
김민규

제·개정이력

2023년 8월 23일 인권헌장 제정

2024년 4월 16일 인권정책 및 인권헌장 전면 개정